

2023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계획

시흥도원초등학교

1 근거 법령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1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3항(수업 등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22-2호)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22-3호)
-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장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기본원칙),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2장제6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), 제8조(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), 제4장제19조(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) 등
-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), 제4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), 제5조(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)

2 추진 개요

- 목적: 원격수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초·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,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 주도
- 적용 대상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- 적용 시기: 2023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
- 정의: ‘원격수업’은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·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

3 기본 원칙

-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법 제1장제3조, 원격교육법 제6조,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3조를 참조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한다.

[원격교육법] 제3조(기본원칙)

-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(對面)교육과 병행함에 있어

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
1. 학생이 신체적·정신적 장애,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2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
 3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

[원격교육법] 제6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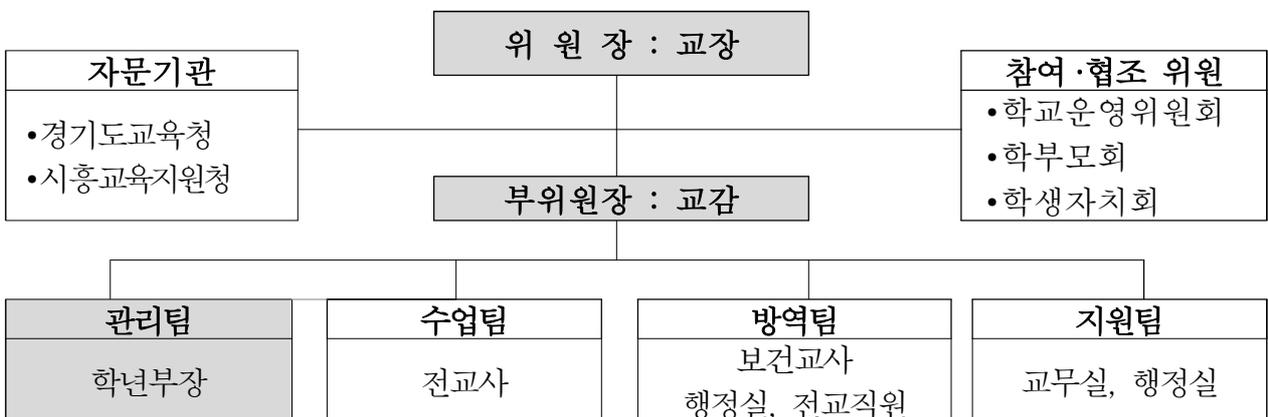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(이하 “학교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.

[원격교육법 시행령] 제3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)

-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학교 시설의 붕괴·파손,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(이하 “학교등”이라 한다)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.

4 시흥도원초 원격수업 관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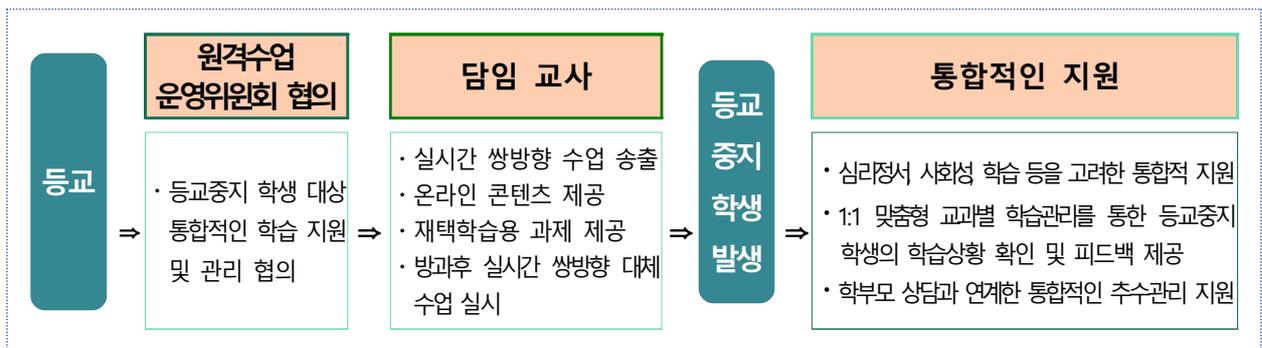
-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.
- 위원은 교장, 교감, 학년부장 6명으로 한다.



-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역할
 -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 - 원격교육의 시간,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
 -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
 -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-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5 세부 운영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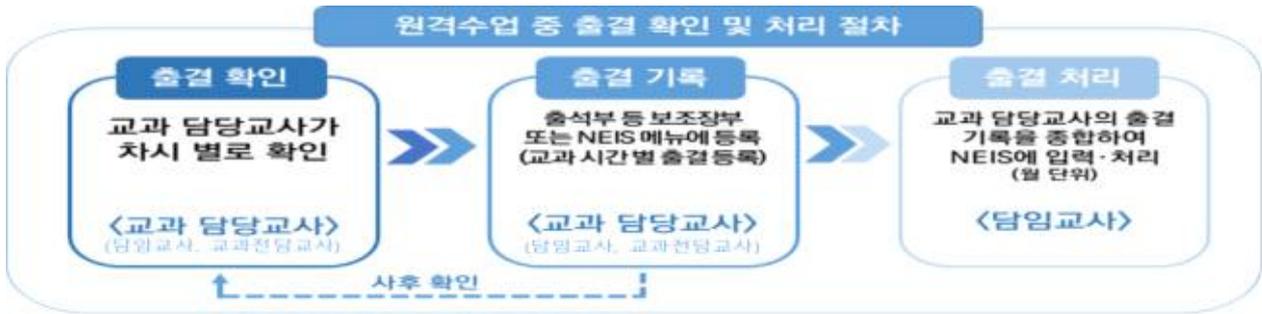
- 원격수업 기본 운영 방침
 - 원격수업 운영은 학생의 발달단계, 개별 학생 특성, 가정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로 병행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운영
 - 단,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교사의 실재감을 보장하는 실시간 소통가능한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여,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
 - 1시간 수업은 단위수업 시간 40분에 준하여 운영



- 원격수업 운영 형태

구 분	운영 형태
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(ZOOM 또는 WHALE ON)을 활용하여 교사-학생 간 화상 수업 ●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
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(강의형)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●(강의+활동형)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※ EBS 강좌,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
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

- 원격수업 중 출결 확인 및 처리 절차: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 하되, 3일(수업일 기준) 내 최종 출결 확인(휴무일은 제외)



수업 유형	출석 확인 방법					
	실시간 담당 교사 확인	LMS 활용 방법		기타(대체 확인)		
		e학습터 진도율	기타 산출물 탑재	메시지/전화	대체학습 확인서	증빙자료
실시간 쌍방향	○					
콘텐츠 활용 중심		○	○	○	○	○
과제 수행 중심		○	○	○	○	○
확인(인정) 기간	원칙적으로 당일(최종 3일(수업일 기준) 내)					

- 실시간 쌍방향 수업: 당일(해당 시간) 플랫폼 화면,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하며,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
- 콘텐츠 활용, 과제 수행 수업: 당일(해당 시간)안내된 콘텐츠(e학습터, 경기교육모아, 경기교사온TV 등 아래 표) 활용하며, 접속불량 등으로 해당 시간 학습이 어려운 경우 3일 내 해당 내용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학습 최종 확인

순	구분	대상	내용	사이트 주소
1	경기교육모아	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격교육 선도학교 운영 사례, 학년군별 온·오프라인수업 콘텐츠, 놀이중심교육활동 등 교사 자체제작 콘텐츠 	https://more.goe.go.kr/edup/index.do
2	경기교사온 TV_초등	교원, 학생, 학부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사 자체 제작 동영상 및 초등 원격수업 등 운영 도움 자료 	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gIgl92sjHQmY7RIJ2WGyBQ
3	경기초등 온배움교실 (대체학습)	교원, 학생, 학부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교중지 학생 및 자기주도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콘텐츠 제공으로 초등 1~6학년 국어, 수학/ 3~6학년 사회, 과학, 영어 교과 학습지 및 동영상 학년별, 교과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 핵심 개념 중심의 문제풀이 방식 	www.온배움교실.kr (유튜브) 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mgWbulmKqS2aG6UhPbPhdA

4	경기함께놀자	교원, 학생, 학부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놀이학습 및 가정연계 놀이활동 콘텐츠 등 	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playstart
5	경기 온나눔콘텐츠	교원, 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교사 온·오프라인 수업 및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주제별 동영상 콘텐츠 302편, 수업 콘텐츠 제작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(이미지, 사진, 일러스트 등) 5,189개 	https://itda.edunet.net/intro.do ‘있다’ 채널로 통합

-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**출결 상황**(지각, 결과, 결석 등) **학부모 확인**(유선, SNS 등)
- **출결 기록**: 교과 담당교사(담임 교사, 교과 전담교사)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(학부모 확인서)를 확인하여 **출석 또는 결석(결과)**으로 기록
- **출결 처리**: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 기록(출석부 등)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(결석계) 확인 후 담임교사가 매일 확인하여 **월(月)단위로 출결(마감)** 처리

○ **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**

- 원격수업의 **확인·피드백** 등을 포함한 수행평가 및 정의적능력평가 계획 수립 → 평가계획서 반영 및 실시
- 진단활동 주간 운영 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으로 관찰·확인 가능한 영역이나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 → 주간학습안내 반영하고 추후 진단활동 결과 제출
-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한 학생 활동은 평가·기재할 수 없음

구분	수업유형	관찰·확인 방법 (평가 및 기록 가능 범위)
평가	등교수업	평가 계획에 의한 수행과정 및 결과 확인
	원격수업	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직접 관찰·확인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동영상 과제(전교과)
수업 과정	등교수업	형성평가, 수행 역량 확인, 태도 및 참여도 관찰 등
	원격수업	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직접 관찰·확인

-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**직접 관찰·확인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**
 -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·토론, 화상 발표 등, **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**으로 평가·기재 가능
-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**직접 관찰·확인하지 못할 경우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**
 -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을 평가·기재 가능
 - 평가 또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활동을 직접 관찰·확인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확보

- 학기 초 수립된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, 감염병 확산 등으로 특정 시기에 평가 실시가 어려울 경우 시기 조정, 방법 변경 또는 해당 평가 실시 여부 등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

○ **학교생활기록부 기재**
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
-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, 원격수업의 내용 (또는 과제 내용)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·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(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지 않은 원격수업(또는 과제)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)
- 각 항목의 기재 방법 등은 ‘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’ 준용

6 학생 · 학부모 · 교원 안내

- 교원 연수: 2023. 2. 27.(월) 연수물로 안내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운영 계획(학습내용, 학습방법, 과제, 수업 이수 시 유의사항 등)을 포함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탑재 : 2023. 2. 27.(월)

원격수업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

결 재	담임교사	교감
		전결

내용	수업 미참여에 따른 대체학습 프로그램 이행 학생의 출석 처리를 위한 학습 내용 확인		
인적 사항	제 학년 반 번 이름:		
원격수업 출석 확인	2023년 ()월 ()일()요일 ~ ()월 ()일()요일		
수업 미참여 사유			
자녀의 학습 내용	※ 학습한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		
2023년 월 일			
			학 생: (서명)
			학부모: (서명)